

현장실습(Internship) 협약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참여기업인 회사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학생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아 주대학교(이하 “병”이라 한다)가 상호간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기간 및 장소)

현장실습 교육(이하 “교육”이라 한다) 기간은 yy-mm-dd_부터 yy-mm-dd_까지 1일에 8시간, 1주간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 장소는 “실습기관”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.

제3조(교육 방법 및 내용) 교육은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“대학”은 실습계획, 준수사항,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강신청 처리한다.

제4조(참여기업의 의무)

- 현장실습은 “갑”과 “병”이 협의하여 사전에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, “갑”은 현장실습 운영 중 “갑”의 사정으로 실습내용,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“병”에게 통보하고 “을”과 “병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교육 및 지도를 위해 실습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, “병”이 제공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습생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실습종료 후 제출한다.

제5조(대학의 의무) “병”은 현장실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며, 실습생에게 정규학점을 부여하여 참여도를 높인다.

제6조(실습생의 의무) 실습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며,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.
- 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실습 중 알게 된 “갑”의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실습생 복리후생)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식당, 휴게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.

제8조(실습지원비) “갑”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4주 기준 월_____원정도로 하되, 단,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계약 시 “실습기관”과 “대학”의 협의에 의한다.

제9조(교육의 평가) “실습기관”은 “대학”이 정한 기준에 따라 “학생”의 교육 및 출근 상황 등에 대한 실습기관 평가서를 교육 종료 즉시 “대학”에 제출하며 “대학”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.

제10조(제경비 지원) 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경비는 “실습기관” 및 “학생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안전·보건상 조치 및 재해보험) “병”은 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·보건 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실습생의 산업재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
제12조(협약의 효력 및 기간)


-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실습기간동안만 효력을 갖는다.
- 본 협약은 “갑” 또는 “병”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, 차회 현장실습 참

여에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.

3. “갑” “을” “병” 은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부득이하게 해당협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해지일 10일전까지 3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교육 훈련법, 근로기준법, “갑” 의 취업규칙 등을 준용하며,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2017 년 12 월 11 일

참여기업	현장실습생	참여대학
주 소 : 사업자등록번호 :	소 속 : 아주대학교 학 번 :	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고유번호:124-82-14602
회사명 :	학과명 :	대학명 :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
대 표 : (인)	성 명 : (서명)	 산학협력단장 최경희 (인)

참 고 용